

예 산 총 칙

2025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74,522,000	14,235,660
일반회계	474,522,000	14,235,66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003,36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5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 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